

# 전략·ESG위원회 규정

2026년 6월 15일



# 전략·ESG위원회 규정

분류번호	
주관부서	경영지원본부 기획재무실 전략팀
제·개정 이력	2021. 5. 4. 제정
	2022. 3. 29. 1차 개정
	2023. 3. 29. 2차 개정
	2024. 3. 27. 3차 개정
	2024. 7. 9. 4차 개정
	2026. 6. 15. 5차 개정

SK 네트워크스 주식회사

## 차 례

- 제 1조 (목적)
- 제 2조 (기능)
- 제 3조 (구성)
- 제 4조 (위원장)
- 제 5조 (소집)
- 제 6조 (의결방법)
- 제 7조 (사전심의 사항)
- 제 8조 (토의 사항)
- 제 9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 제10조 (간사조직)
- 제11조 (의사록)
- 제12조 (규정의 개정)

附 則

# 전략·ESG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전략ESG위원회(전략·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 회사의 전략 및 환경(Environment)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 및 독립이사가 아닌 이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또는 토의한 사항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

## 제5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 (의결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사전심의 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전략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
  - 1. 회사의 중장기 전략
  - 2. 회사의 경영계획
  - 3. <삭제> (2023. 3. 29 부)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투자 및 기획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
  - 1.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또는 기존사업 철수(전년도 매출액 기준)
  - 2.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

3.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취득가액 기준. 단,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단, 자금 운용 관련 투자차원의 유가증권 취득은 제외한다.
  4. 회사의 해산, 합병
  5.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양수도금액 기준)
-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회계 및 재무관리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3. 자본의 감소
  4.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5.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이사회 부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한다.
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주요 내용의 변경 포함)
  2.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회 승인 사항
- ⑤ 위원회는 기타 이사회 부의사항 중 회사의 전략,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 (토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1. 회사 및 그 자손회사의 주요 경영 전략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산업별 사업 추진 전략
3. ESG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ESG 실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사의 전략, 평가, 주주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 또는 ESG 관련 사항

#### 제9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0조 (간사조직)

-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기획재무실 전략팀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재무실장이 담당한다.
-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 ③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경영실 SV추진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의사록)

-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간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은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附 則

1.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